

2024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전통기술포럼 제2차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24. 3. 28.(목), 13:0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김삼기(위원장), 김정희, 서도식, 신타근,
심연옥, 이은주, 임승택, 장남원, 진명(정혜린)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

구체적인 실행 내용
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

=

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

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

=

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
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

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
계획 수립

=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


○ 조사단 구성

=

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
이상으로 구성
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
여부 확인 후 확정
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

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

=

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
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
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
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
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

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
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
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

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| (공개) |
| 2 |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 심의 | (공개) |

【검토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정·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| (비공개)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전승교육사 양인숙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- 추진경과
 - (‘23.12.22.) 전승교육사 양인숙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
 - (‘24. 1.15.) 제1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(원안가결)
 - (‘24.1.22.~2.20.)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(관보 공고)
 - 예고사유: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양인숙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,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
- 지 정 일 : 1996.5.1.
- 전승자 현황 : 전승교육사 2명

구분	성명(성별, 생년)	인정일	기·예능
전승교육사(2명)	양인숙(여, ‘46년생) 유선옥(여, ‘54년생)	2004.3.20.	완초장

2) 명예보유자 신청내용

- 대 상 자 : 완초장 전승교육사 양인숙(여, ‘46년생)
- 신청사유 : 전승교육사 본인이 명예보유자 인정 요청

라. 검토의견

- 그 간의 경과와 인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양인숙을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명예보유자로 인정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9명, 가결 9명

2.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4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분과 제1차 회의(2024.1.15.)에서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로 김영희를 보유자로 인정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, 관보에 30일간 공고('24.1.22.~'24.2.20.)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
- 지 정 일 : 1996.2.1.
- 전승자 현황 : 보유자 1[장주원('37/'96.2.1.)], 전승교육사 1[장 석('60/'04.4.16.)]

2) 추진경과

- ('23.1.17.)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
- ('23.2.20.~3.30.)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및 접수
- ('23.4.6.)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
 - 조사자: 관계전문가 3명
 - 조사대상자: 4명
 - 조사내용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1단계 조사지표(개인종목)에 따른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
 - 조사방법: 제출 서류 및 동영상 자료 평가
 - 전승환경의 전승기반 1단계 지표는 ‘전승능력’과 ‘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’ 적용
- ('23.5.25.)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
 - 김영희, 맹순영, 장 석 등 3인에 대해 2·3단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
- ('23.12월)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 2·3단계 실시
 - 조사자: 관계전문가 3명

- 조사대상자: 3명
- 조사방법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2,3단계 조사지표(개인종목)에 따른 전승기량 및 역량, 전승기반 평가
- 전승기량 실기능력 지표
 - 전승기량 및 역량(140점) : 실기능력(100), 종목이해도(20), 교수능력(20)
 - 전승환경(20점) : 조사대상자의 시설·장비수준(10) 및 전승의지(10)
 - * 2, 3단계 통합조사로 2단계 조사지표 적용하되, 실기능력은 3단계 배점 적용 → 100점 만점 환산
- 지표별 평가방법
 - ‘실기능력’은 ‘영친왕 옥대’ 전체 제작과정으로 함
 - ‘교수능력’, ‘해당종목의 이해도’ 및 ‘전승의지’는 제작공정별 설명과 별도 면담을 통해 평가
- ('24.1.15.) 제1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분과 보유자 인정예고 의결
 - 김영희를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인정예고 함
- ('24.1.22.~2.20.)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(관보 제20672호)

문화재명	구분	성명	기·예능	주소
옥장(玉匠)	보유자 인정	김영희(金泳熙)	옥장	경기도 파주시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라. 검토의견

- 그 간의 경과와 인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김영희를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로 인정함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9명, 가결 9명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정·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